

#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5월 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5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5. 18) 상정
- 제15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5. 18) 수정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조재형)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금고가 선정되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의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금고의 지정절차와 약정의 체결,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input type="radio"/> 주요 개정사유는?	<input type="radio"/> 합리적인 시 금고의 선정과 효율적인 금고 관리를 위함.
<input type="radio"/>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위원수 등의 조정은 가능한지?	<input type="radio"/> 현재 위원회의 수는 타 자치단체 등과 비교시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됨.

###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없  음

#### 나. 반대토론

없  음

### 5. 심사결과

수정의결

### 6. 소수의견

없  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398호
의결 년월일	2009. 5. 21. (제152회)

제안년월일 : 2009. 5. 18.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 1. 수정이유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를 확대」 하고, 위원들의 「전문성을 향상」 을 위하여 수정함.

## 2. 수정 주요골자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 위촉토록 수정함.(안 제5조 제2항)
-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학교수 전공 분야」 를 명시 하여 수정함.(안 제5조 제3항)

##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제2항 중 ‘9명’을 ‘11명’으로 수정한다.

안 제5조 제3항 제1호 중 ‘2명’을 ‘4명’으로 수정한다.

안 제5조 제3항 제3호 중 ‘대학교수’를 ‘경영학 또는 경제학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로 수정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

##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① (생 략)</p> <p>② -----<u>9명</u>----- -----</p> <p>③ (생 략)</p> <p>1. ----- <u>2명</u></p> <p>2. (생 략)</p> <p>3. <u>대학교수</u> ----- ----- -----</p>	<p>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①(<del>개정안과 같음</del>)</p> <p>② -----<u>11명</u>----- -----</p> <p>③ (개정안과 같음)</p> <p>1. ----- <u>4명</u></p> <p>2. (개정안과 같음)</p> <p>3. <u>경영학 또는 경제학 등 관련분야</u> <u>대학교수</u> ----- -----</p>

[수정안 포함]

##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부천시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특정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장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제3조(금고의 지정) ① 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그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시가 경기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해당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쟁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하고,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

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일반회계의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

제4조(평가기준) ① 시장이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의 수준
3. 시민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시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4명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명

3. 경영학 또는 경제학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4명

제6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되, 위원회의 개인 정보는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비밀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
3.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금고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담당이 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금고의 지정절차)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의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평가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고,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약정의 체결 등)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취급업무
2. 금고관련 관계 법령 및 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3.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4. 일시차입금 및 기채
5. 배상 및 변상 책임
6. 비용부담 및 수수료
7. 약정의 해지

8. 합동근무 등 인수인계 절차

9.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④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금고운용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의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부천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제2항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총 계		100	
	소 계	3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평가기관 6</li> <li>- 국내평가기관 4</li> </ul>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S 자기 자본비율 (안정성) 9</li> <li>- 무수익 여신비율 (건전성) 7</li> <li>- 자기자본 이익율 (수익성) 6</li> <li>- 대손충당금 적립율 (건전성) 3</li> </ul>		
	소 계	18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소 계	19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9)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소 계	18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	
	라. OCR센터 운영계획	(3)	
	소 계	10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5)	
	나.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	